
해남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정비)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

2023. 03.



목 차

제 1 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2
1.2 계획의 개요	2
1.3 법적 실시근거	3
1.4 계획의 내용	4
제 2 장 대상지역 설정	22
2.1 대상지역 설정	23
제 3 장 대안의 설정	25
3.1 대안의 종류 및 설정방법	26
3.2 대안의 설정	27
제 4 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29
4.1 환경영향요소 추출	30
4.2 평가항목의 설정	31
제 5 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33
5.1 의견수렴 계획	34
제 6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35
6.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36
6.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38

제 1 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1.2 계획의 개요
- 1.3 법적 실시근거
- 1.4 계획의 내용

제 1 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에 따라 농어촌도로를 효율적으로 정비·개발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기술적 제반사항을 고려한 기초자료 조사 및 평가 등 기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 이미 지정된 농어촌도로와 미 수립된 도로를 조사 분석 등 농어촌도로 추가(변경) 지정하여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본 농어촌 도로망 계획수립에 따른 환경 보전계획과의 부합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자 함.

1.2 계획의 개요

- 가. 명 칭 : 해남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정비)
- 나. 위 치 : 해남군
- 다. 총 연 장 : 923.3km(군도 27개소, 농어촌도로 182개소)
- 라. 사업자 : 해남군
- 마. 승인기관 : 해남군

1.3 법적 실시근거

1.3.1 전략환경영향평가

- 본 사업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관련 [별표 2]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에 해당됨.

<표 1.3-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관련규정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2. 개발기본계획 마. 도로의 건설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에 따른 도로기본계획	계획의 확정 전

1.3.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 행정계획에 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의거하여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을 결정하여야 함.

<표 1.3-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근거

환경영향평가법
<p>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p> <p>①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1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p> <p>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 이라한다)의 사업계획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자료) 환경영향평가법, 2021, 환경부

1.4 계획의 내용

1.4.1. 해남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노선변경(안)

<표 1.4 - 1> 총괄표

구분	군도		면도		리도		농도		합계	
	연장 (km)	노선수								
기정	246.0	25	94.2	15	314.1	95	218.1	58	872.4	193
변경(안)	267.9	27	153.6	27	346.4	108	155.4	47	923.3	209
증 / 감	+21.9	+2	+59.4	+12	+32.3	+13	-62.7	-11	+50.9	+16

<표 1.4 - 2> 군도 노선변경(안)

구분	노선신설	노선폐지	노선연장	노선단축	노선조정	등급조정	합계
군도	3	2	3	1	5	5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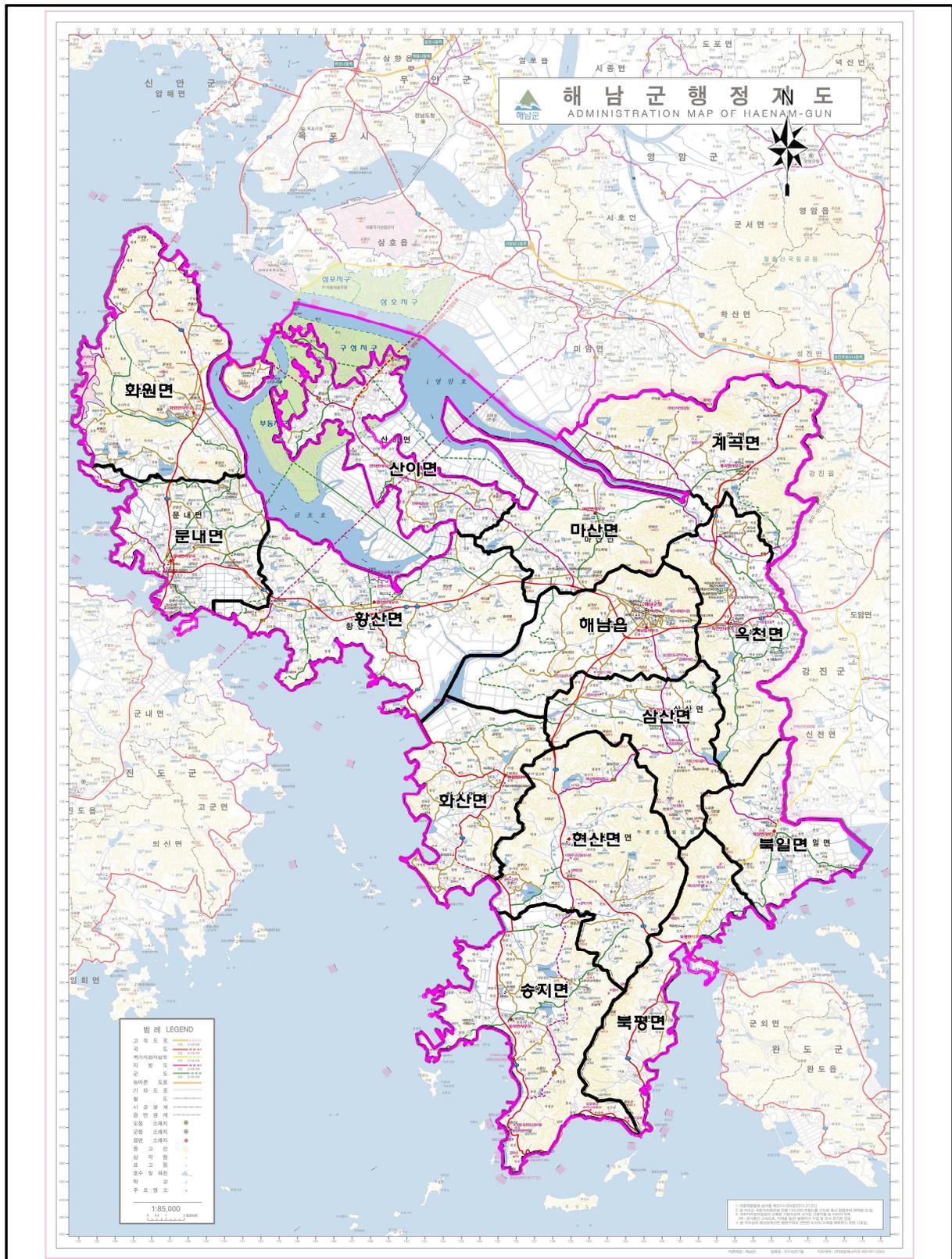
<표 1.4 - 3> 읍·면별 농어촌도로 노선변경(안)

구분	노선신설	노선폐지	노선연장	노선단축	노선조정	등급조정	합계
해남읍	0	2	2	2	3	2	11
삼산면	1	0	0	1	0	0	2
화산면	1	0	2	1	0	0	4
현산면	0	0	1	1	2	1	5
송지면	0	1	0	1	1	1	4
북평면	0	1	0	0	3	0	4
북일면	1	1	0	1	1	0	4
옥천면	3	1	1	0	3	0	8
계곡면	1	1	4	1	2	0	9
마산면	4	1	1	3	2	1	12
황산면	0	2	3	2	4	3	14
산이면	0	0	1	0	2	1	4
문내면	2	2	1	2	2	2	11
화원면	3	0	1	1	1	1	7
합계	16	12	17	16	26	12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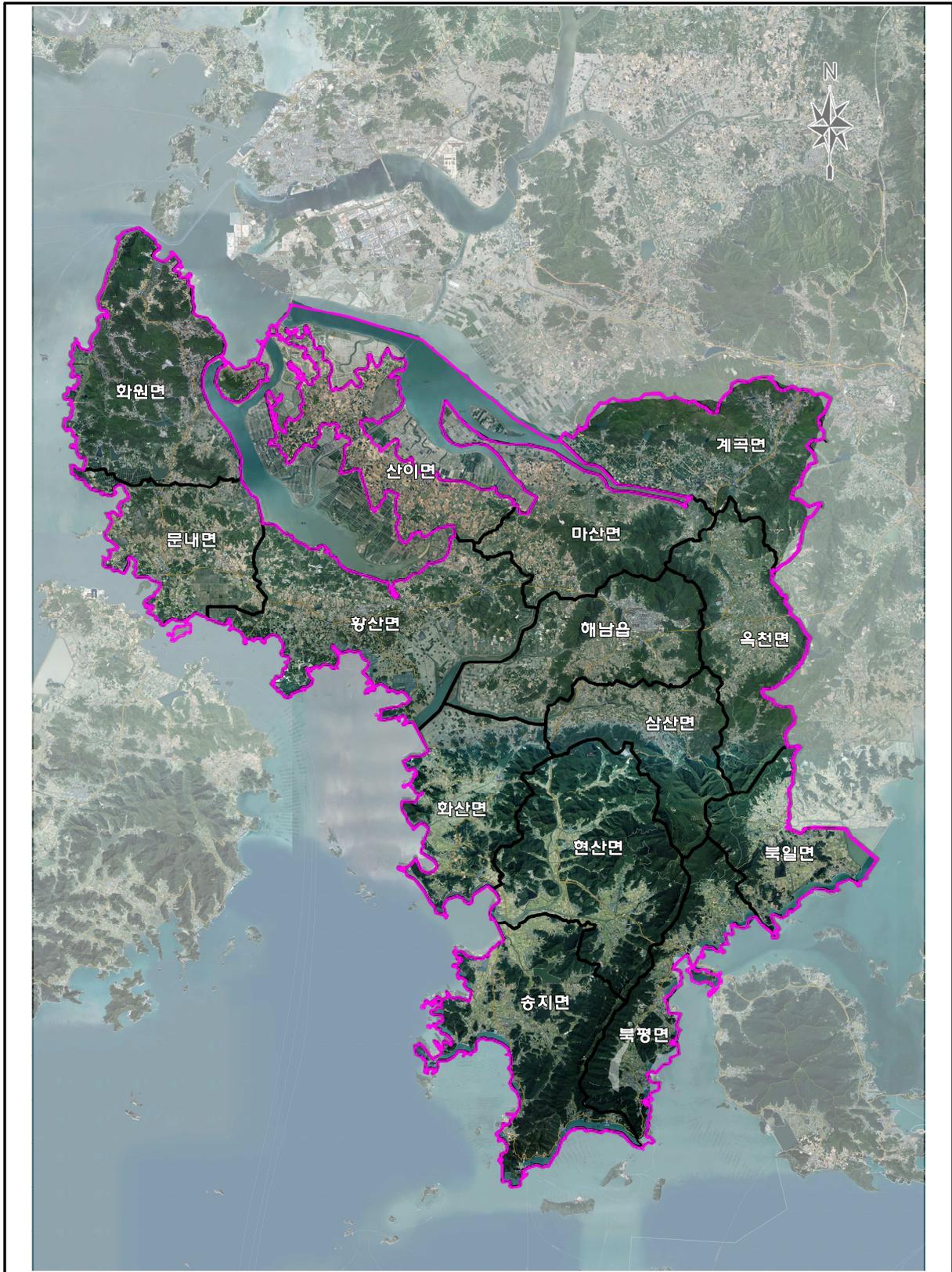
<표 1.4 - 4> 노선 종류별 노선변경(안)

구분	군도	농어촌도로			합계
		면도	리도	농도	
노선신설	3	8	7	1	19
노선폐지	2		4	8	14
노선연장	3	4	10	3	20
노선단축	1	2	9	5	17
노선조정	5	1	13	12	31
등급조정	5	4	2	6	17
합계	19	19	45	35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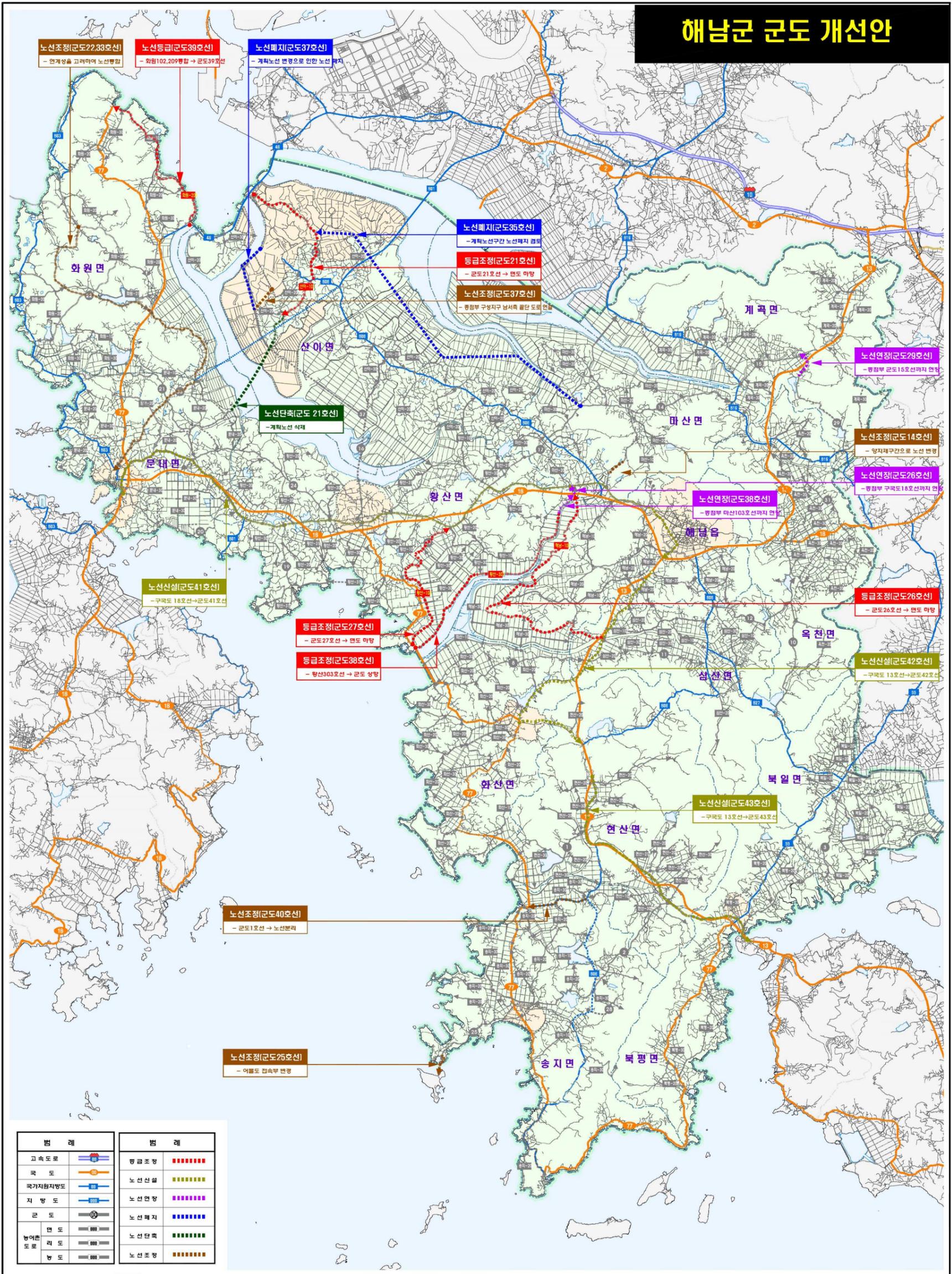
<그림 1.4-1> 해남군 읍, 면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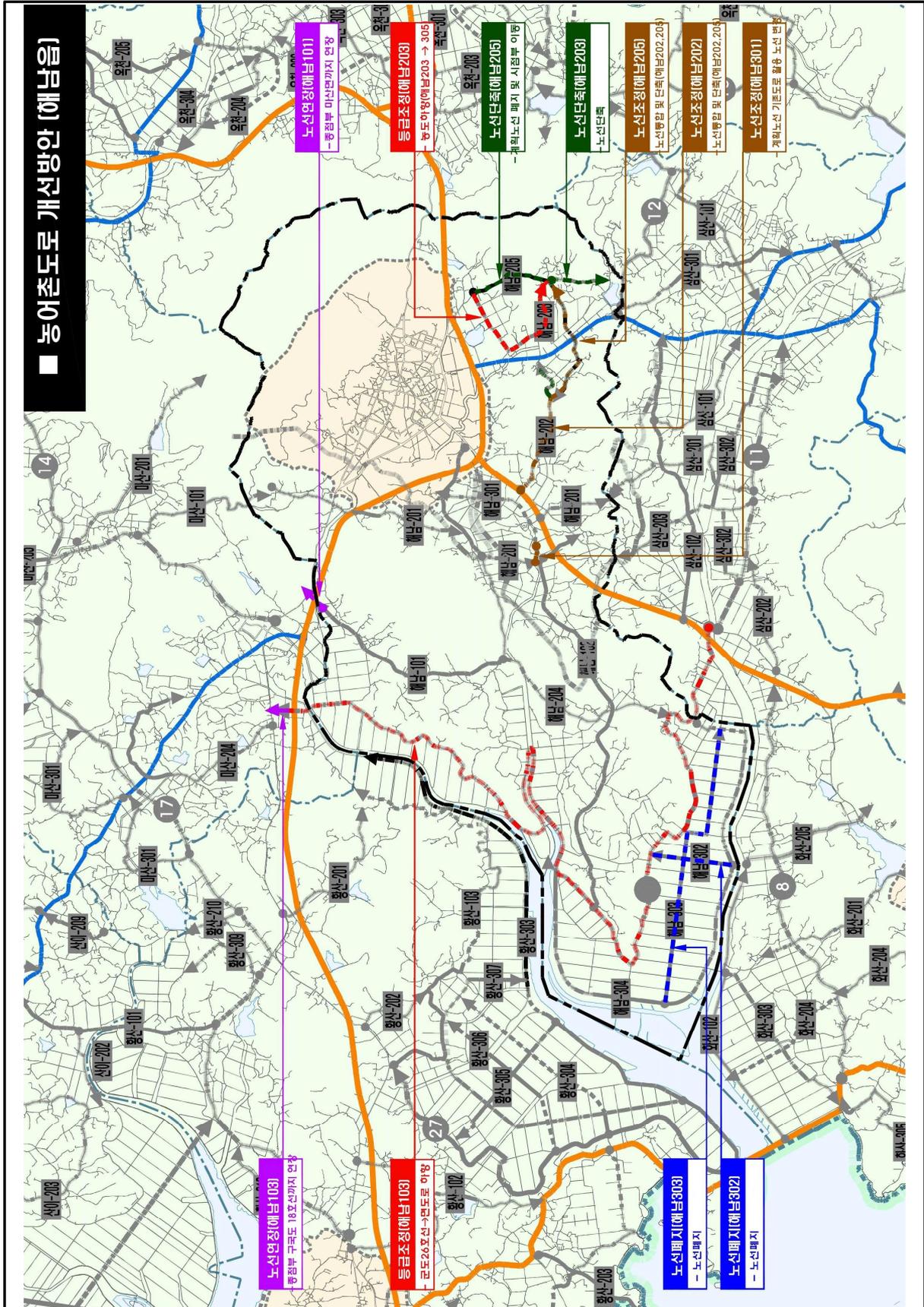
<그림 1.4-2> 해남군 읍, 면 위성지도



<그림 1.4-3> 해남군 군도 개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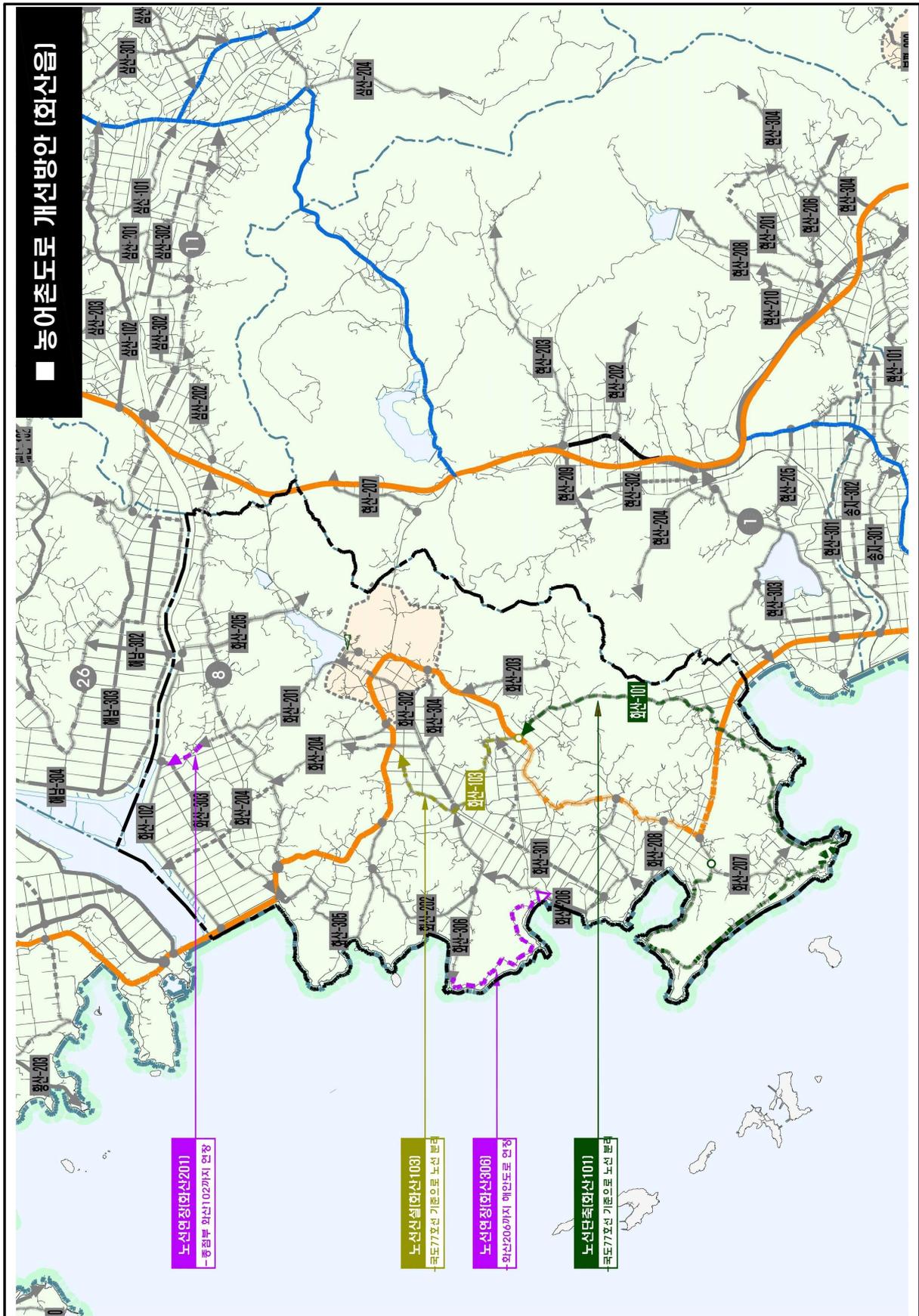
<그림 1.4-4> 해남군 농어촌도로 기본계획(해남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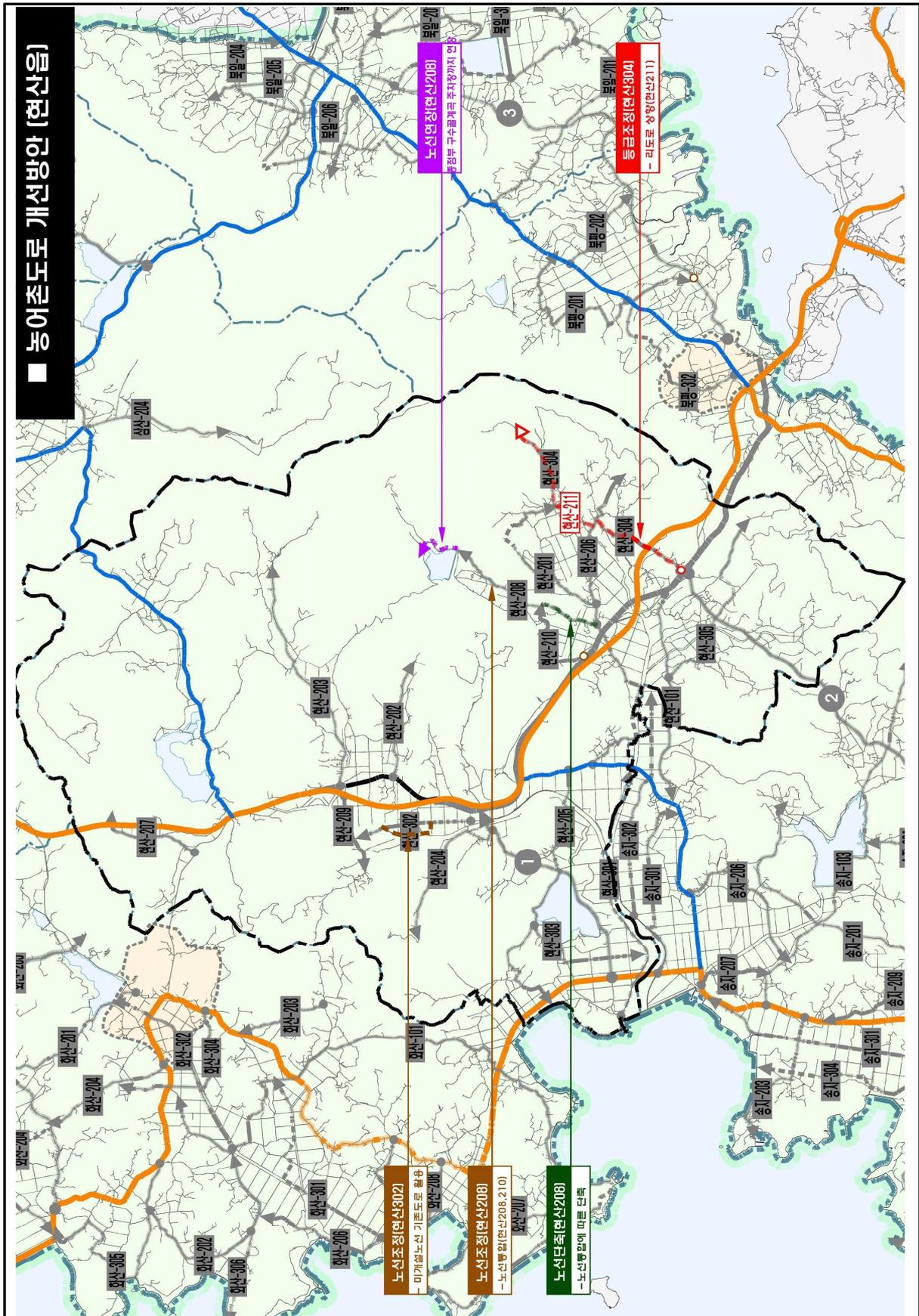
<그림 1.4-5> 해남군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삼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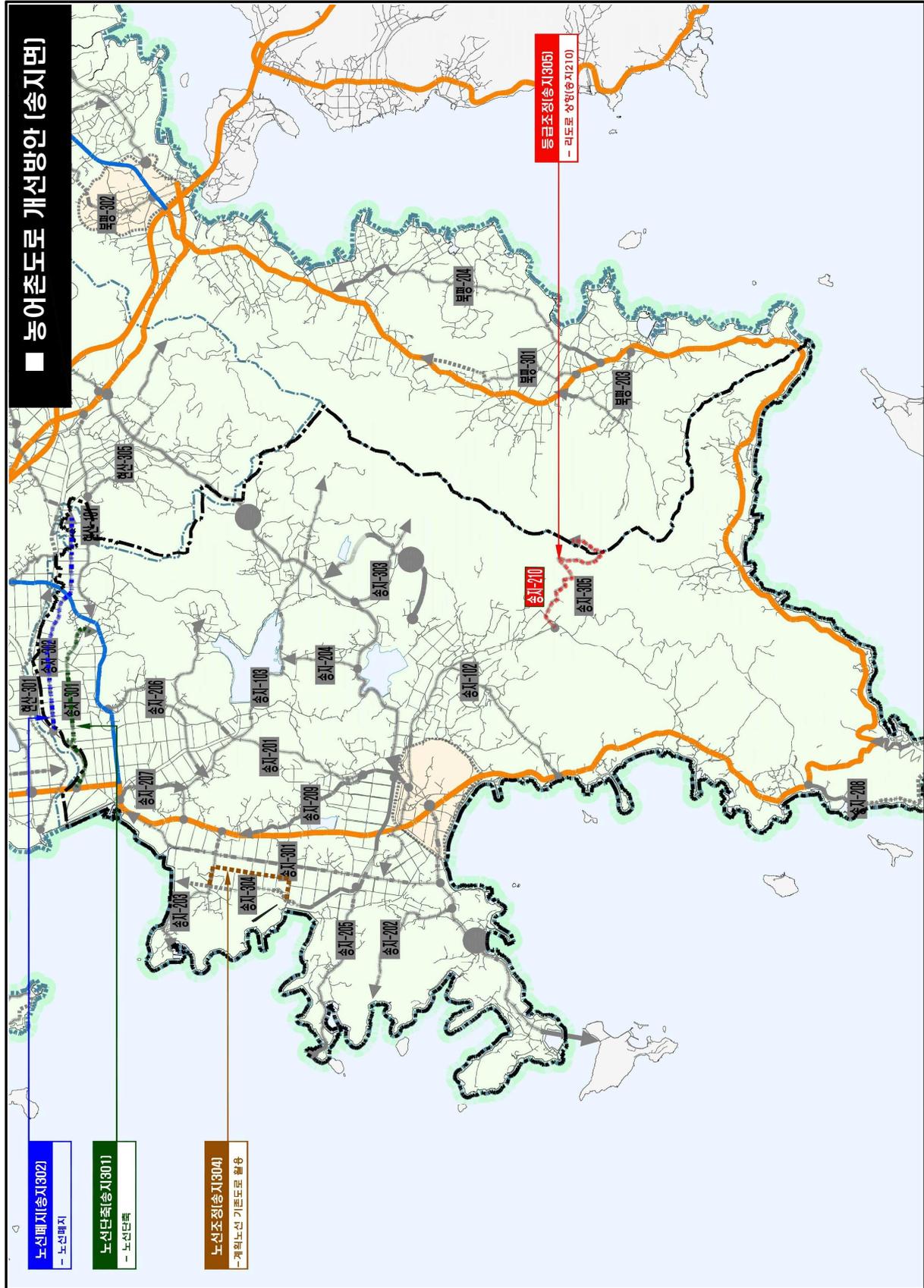
<그림 1.4-6> 해남군 농어촌도로 기본계획(화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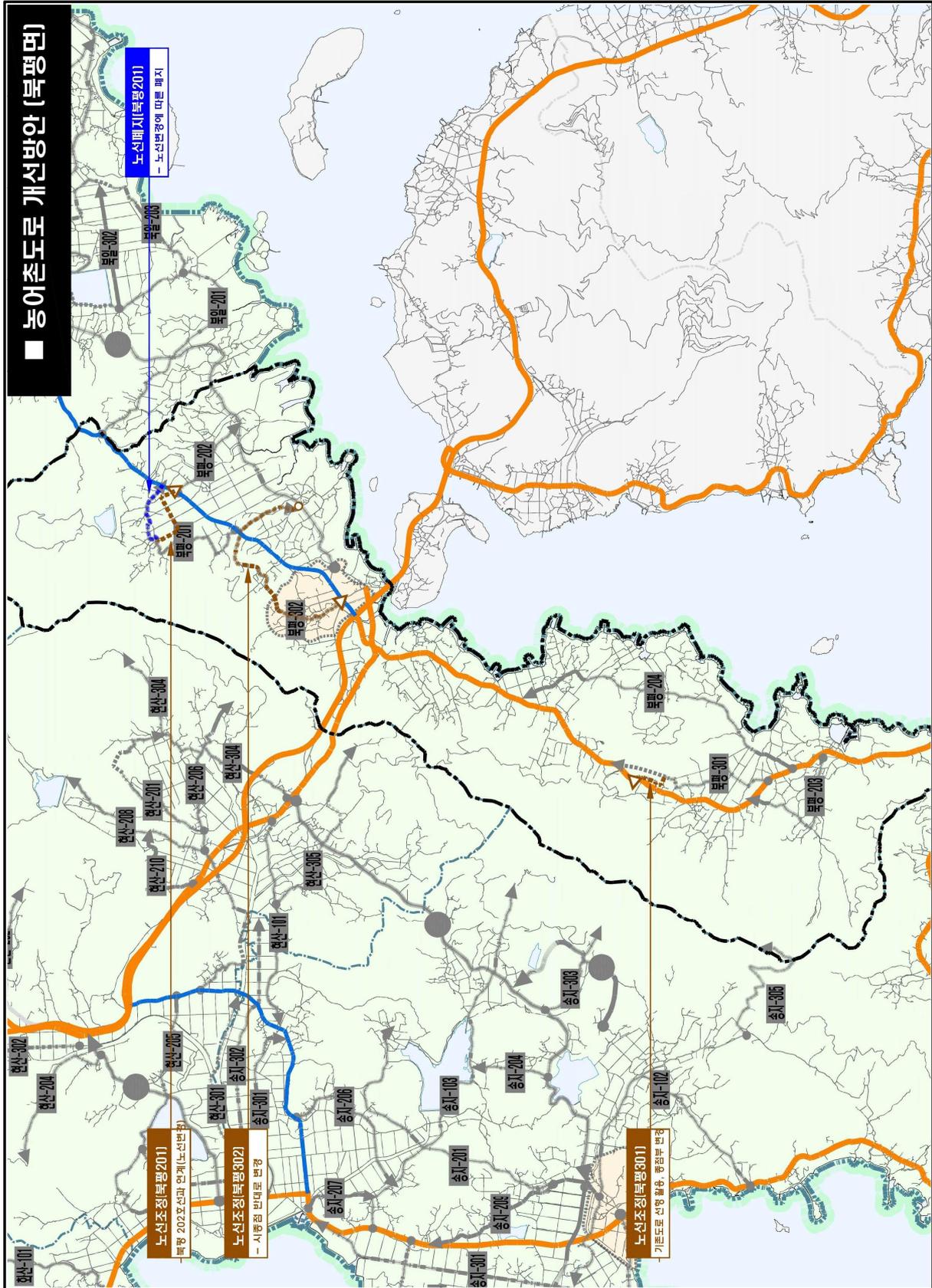
<그림 1.4-7> 해남군 농어촌도로 기본계획(현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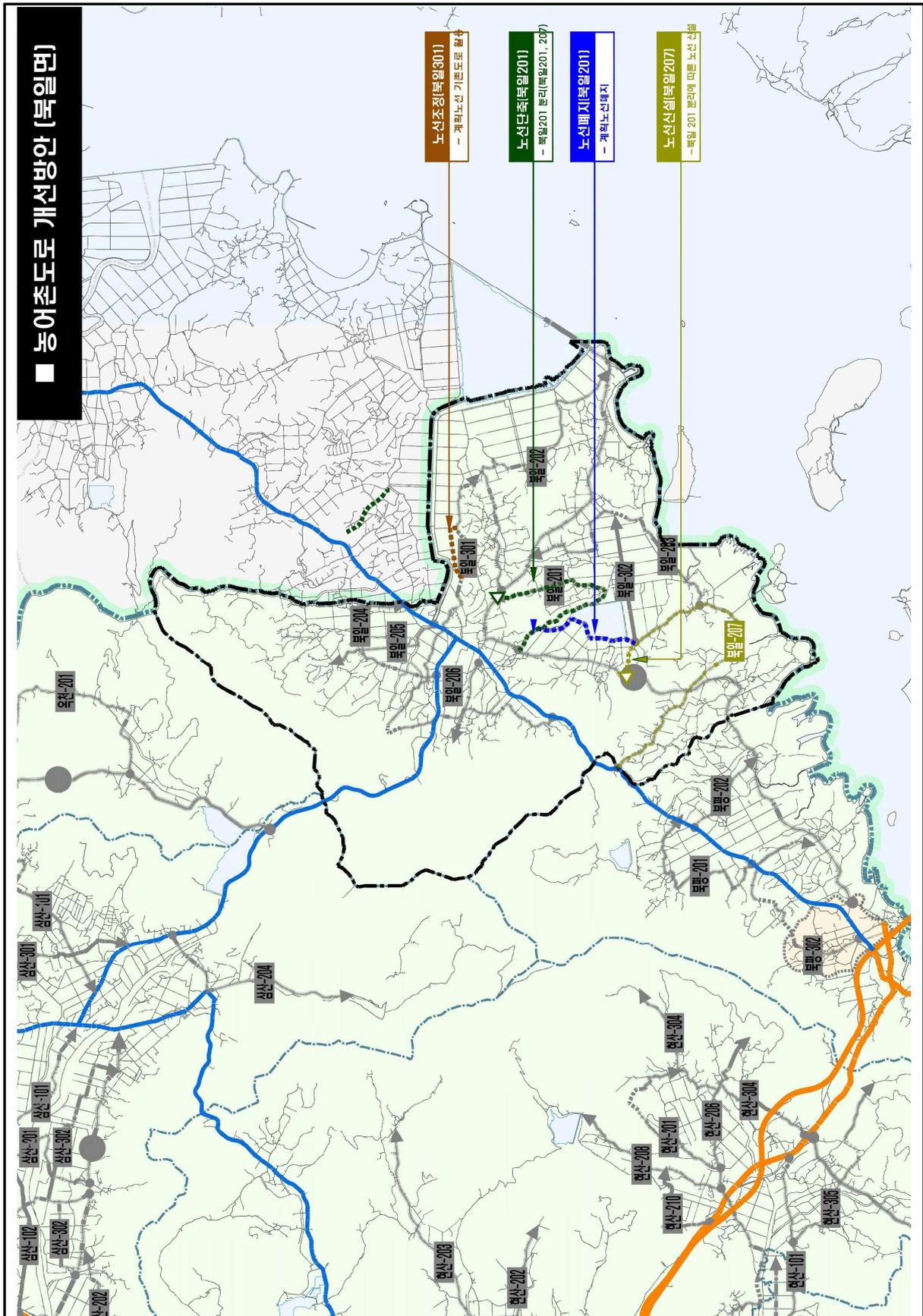
<그림 1.4-8> 해남군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송지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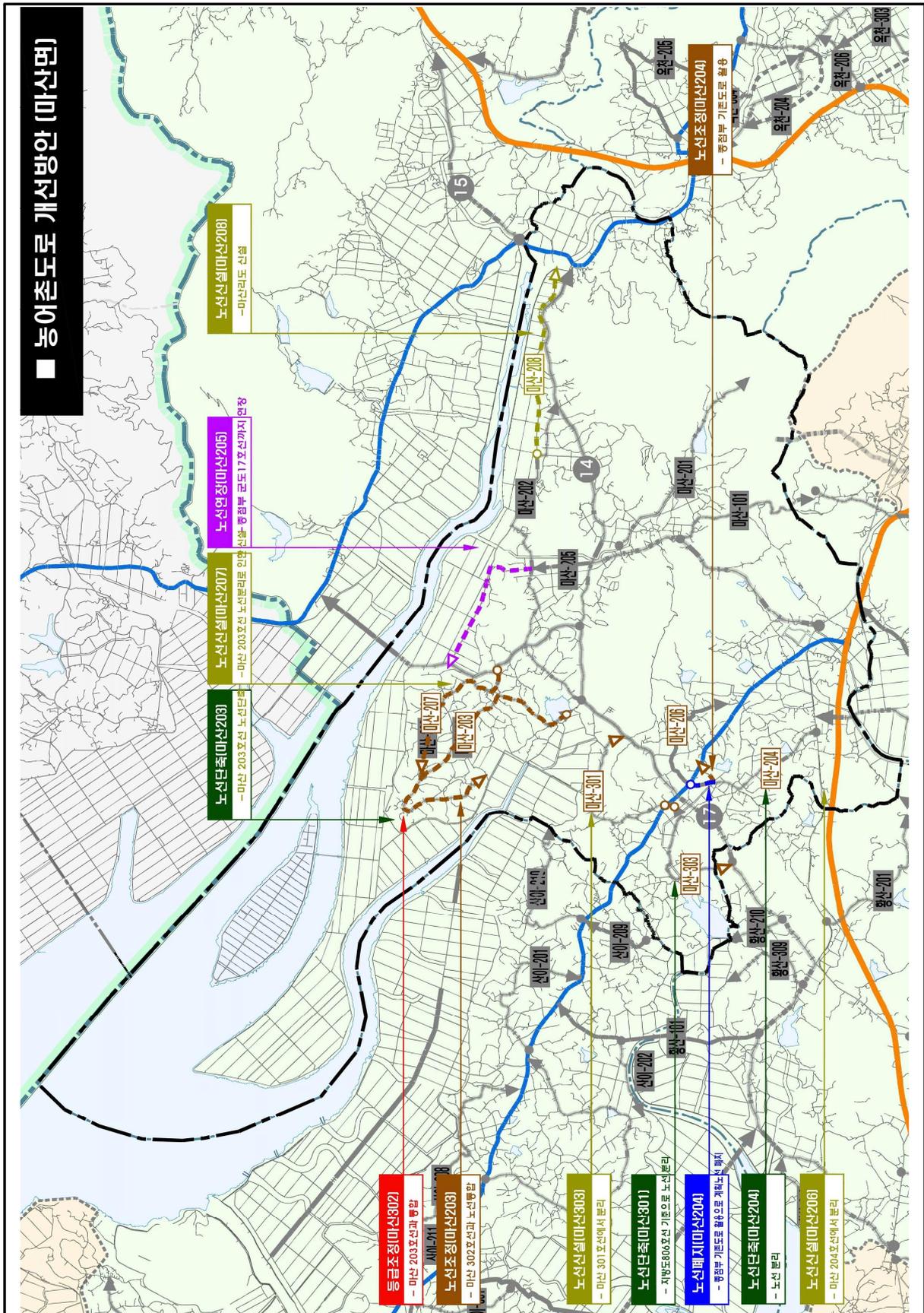
<그림 1.4-9> 해남군 농어촌도로 기본계획(북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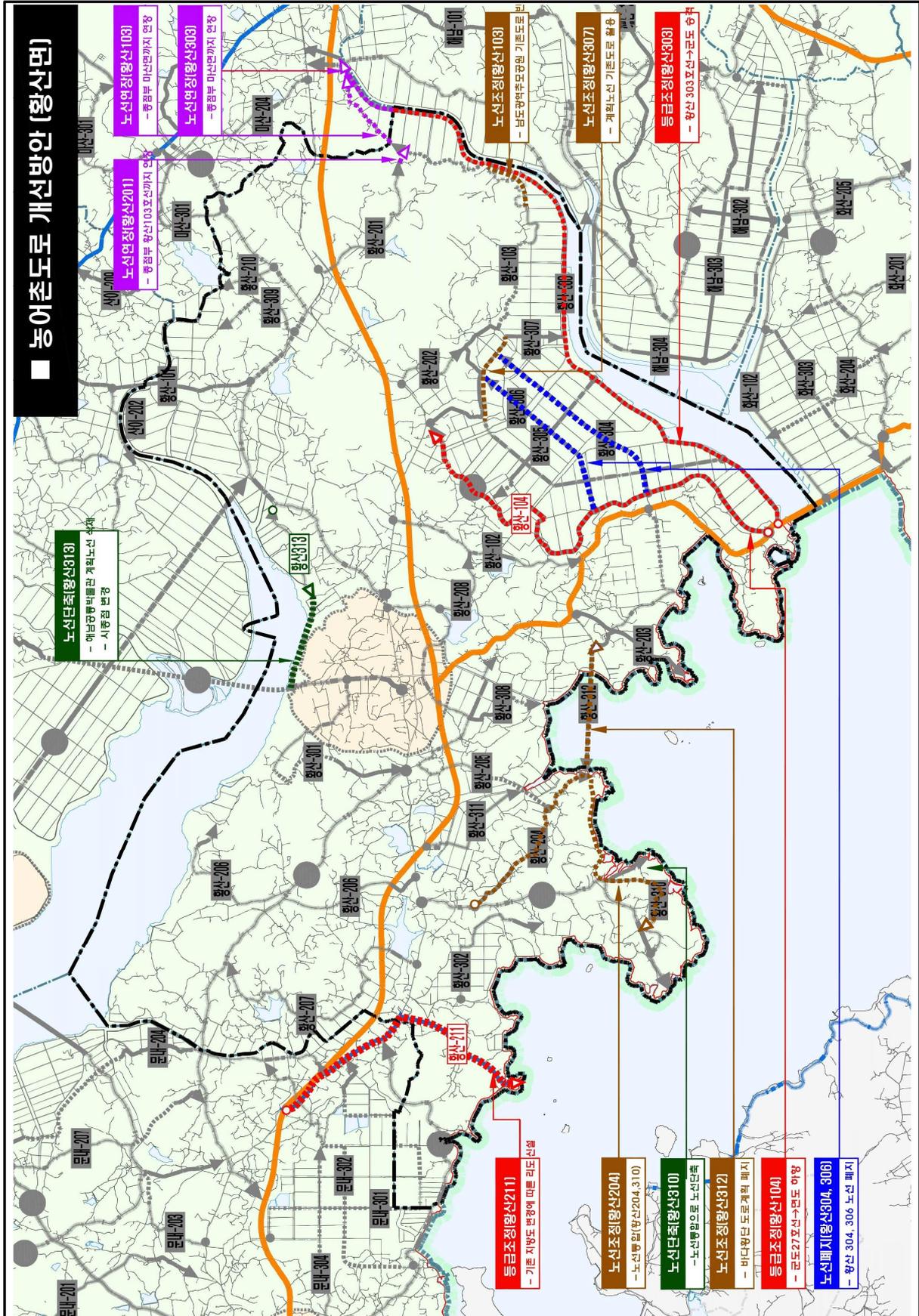
<그림 1.4-10> 해남군 농어촌도로 기본계획(복일면)



<그림 1.4-13> 해남군 농어촌도로 기본계획(마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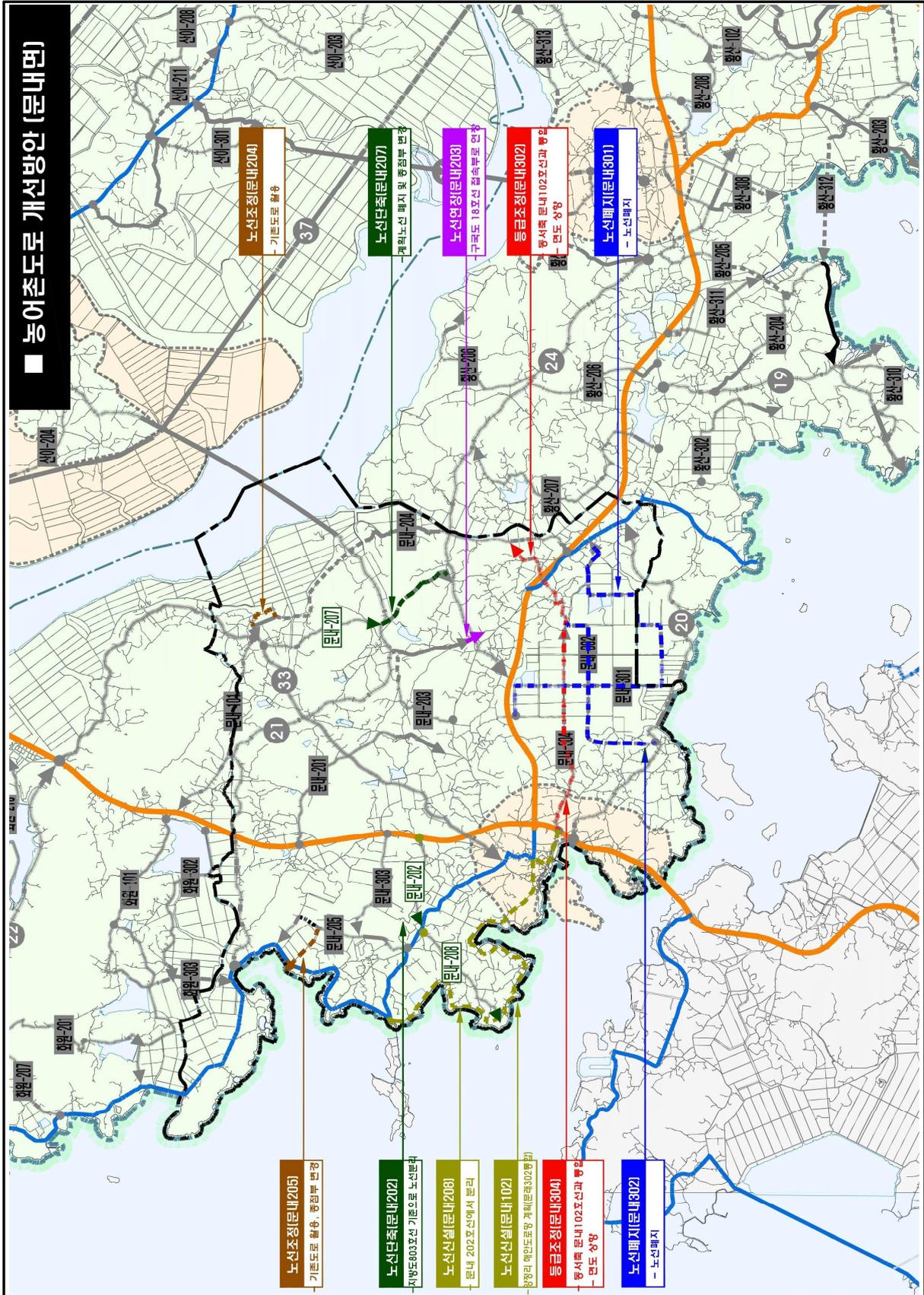
<그림 1.4-14> 해남군 농어촌도로 기본계획(황산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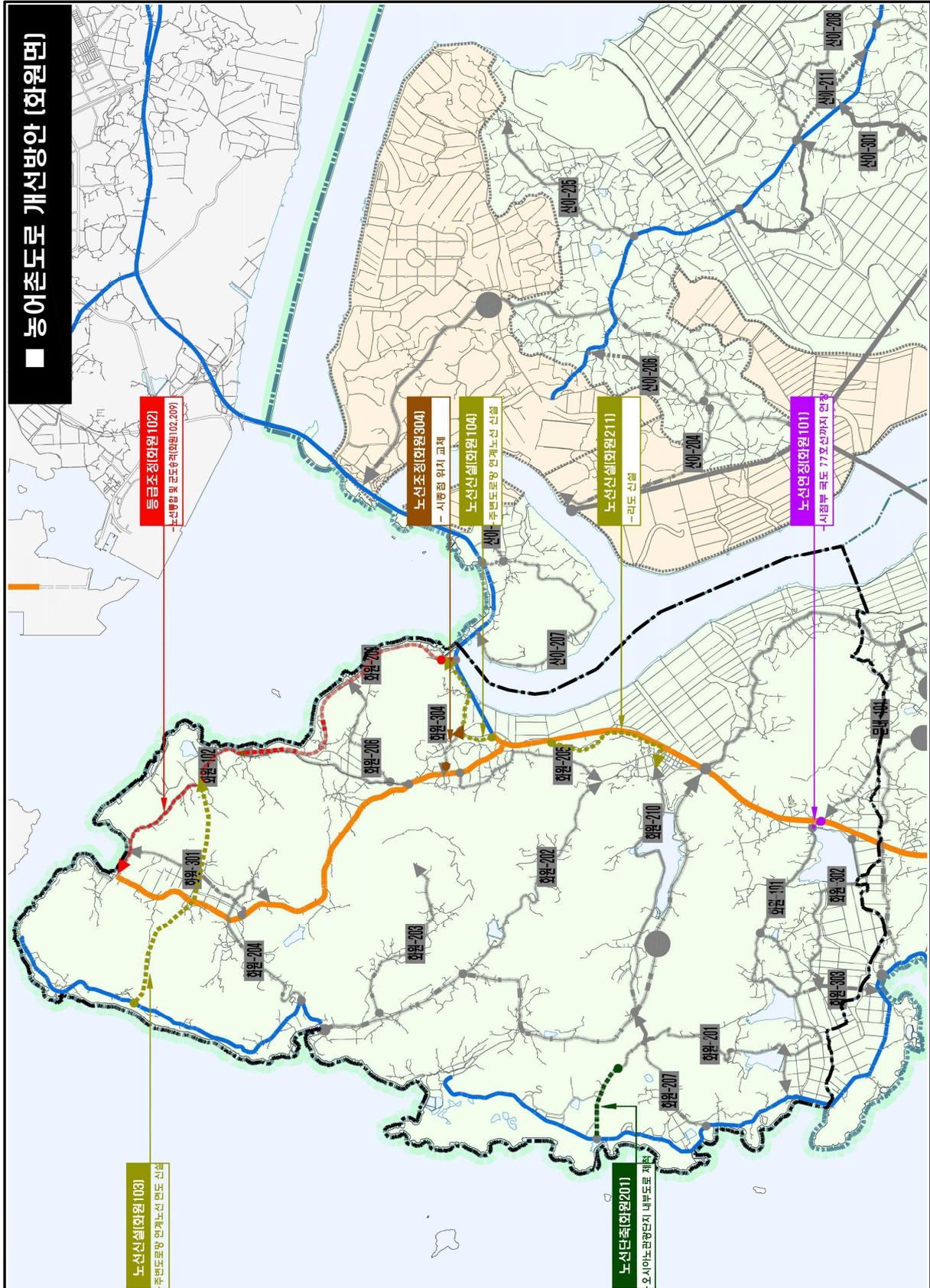
<그림 1.4-15> 해남군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산이면)



<그림 1.4-16> 해남군 농어촌도로 기본계획(문내면)



<그림 1.4-17> 해남군 농어촌도로 기본계획(화원면)



제 2 장

대상지역 설정

2.1 대상지역 설정

제 2 장 대상지역 설정

- 대상지역의 설정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사업특성, 입지여건, 지형특성 등을 고려하여 광역대상지역 및 중점대상지역으로 구별하여 환경상 미치는 영향을 정량·정성적으로 예측하고자 설정함.

2.1 대상지역 설정

- 본 계획시행에 따른 주변 환경상의 영향을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계획대상의 특징 및 주변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황조사 범위와 예측범위로 구분하여 설정함.
- 따라서, 평가대상지역 설정은 주요 평가항목별 영향요인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대상지역 및 중점대상지역으로 구분 설정함.
- 군도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아닌 것으로 검토되어, 금회 평가대상지역에서 제외함.

2.1.1 계획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위 치 : 전남 해남군
- 총연장 : 923.3km(군도 27개소, 농어촌도로 182개소)

나. 시간적 범위

- 2023년 ~ 2025년

2.1.2 환경영향인자별 검토대상지역 설정

- 환경영향인자별 검토대상지역 중 중점평가지역은 계획구간 일원으로 설정하여 검토하였으며, 광역평가지역은 해남군 일원으로 설정하여 검토함.

<표 2-1> 중점 및 일반 평가항목의 평가방법과 평가대상지역 범위

구분	항 목		평 가 내 용	대상지역 범위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본 계획과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일관성 및 연계성 검토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대안 설정 분석의 적정성		-개발계획 미 수립을 포함한 계획 수립 전·후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적정성 검토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계획시행으로 식생의 훼손, 동물상의 서식지 이동, 육수·육상 동·식물상의 서식지훼손 여부 등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자연환경자산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 인근 자연환경자산 등 현황조사 및 미치는 영향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지형·지질 현황 및 입지특성 파악 -생태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 단절 여부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주변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	-주변의 경관 현황파악 및 계획시행에 따른 인위적 경관조성이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여부 파악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수환경의 보전	수질	-수질보전 관련 구역지정 현황 파악	-계획대상지 및 하류수계
			해양환경	-공사시 토사유출에 의한 영향	-계획대상지 하류 해양지역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 상	-기상인자별 현황	-해남군
			대 기 질	-대기오염도 현황 -장래 개별 개발사업시 대기질에 영향 발생 여부	-계획대상지 및 대기오염물질 확산 범위
			온실가스	-공사시 공사장비 운영으로 인한 온실가스의 영향 예상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토양	-토양오염현황 -장래 개별 개발사업시 토양에 영향 발생 여부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소음·진동			-소음·진동현황 -장래 개별 개발사업시 소음·진동에 영향 발생 여부	-계획대상지 및 소음진동영향범위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장래 개별 개발사업시 폐기물의 발생 여부	-해남군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 지 이 용	-사업계획 현황 파악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인 구	-해남군 인구현황 -장래 인구 변화	-해남군	

제 3 장

대안의 설정

3.1 대안의 종류 및 설정방법

3.2 대안의 설정

제 3 장 대안의 설정

3.1 대안의 종류 및 설정방법

- “대안”이라 함은 환경적 목표와 기준 유지를 전제로 행정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공법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한 결과를 말하는 것으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아래 표의 범위내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의1』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적정한 대안을 선정하여야 함.
- 본 계획에 대한 대안 설정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 2022-240호』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 12, 환경부』에 의거하여 “계획비교”, “시기·순서”를 선정하여 대안을 비교검토함.

<표 3-1>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대안종류	대안 선정방법	대안 선정사유 및 설명	선정여부
계획비교	◦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와 수립시(Action)를 비교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수단·방법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본 계획은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으로 수단·방법을 결정하는 계획은 아니므로 수단·방법관련 대안은 제외	×
수요·공급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본 계획구간에 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은 아니므로 수요·공급의 대안은 제외	×
입 지	◦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 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 본 계획구간은 행정계획의 목적에 부합되는 위치와 구역이므로 입지관련 대안은 제외	×
시기·순서	◦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 후 개발 대상지의 사업시행에 따른 시행시기에 대하여 대안을 비교·검토	○
기 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본 계획은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 사항으로 별도의 기타관련 대안은 제외	×

자료: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의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2-240호)

3.2 대안의 설정

가. 계획비교

- 본 해남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정비)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에 따라 농어촌 도로를 효율적으로 정비, 개발하기 위하여 사회, 경제적, 기술적, 제반사항을 고려한 기초, 기본자료 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의와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을 향상 시켜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임.
- 계획 수립(Action) 및 계획 미수립(No Action)에 따른 대안별 환경적인 비교·분석을 실시함.

<표 3-2> 계획비교 대안 검토 결과

구 분		대안 1 (Action)	대안 2 (No Action)
기본방향		◦계획 수립시	◦계획 미수립시
장 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로망 계획수립 ◦효율적인 도로 운영·관리 대책 마련	◦현재도로를 그대로 사용하므로 해남군 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주변으로 환경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
단 점		◦사업시행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주변으로 환경적으로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	◦효율적이지 못한 도로 운영·관리 ◦도로기능의 저하와 교통 혼잡 유발
환경영향	토지이용 측면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본 기본계획을 미 수립할 경우 무분별하고 비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토지의 효율성 저하 예상
	각종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에 따라 계획된 입지가 환경관련 보호지역 인접 위치시 적정 저감방안 수립 필요	◦직접적인 영향 없음
	생태계 훼손가능성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에 따라 계획된 입지에 대한 공사 시행시 일부 생태계 훼손이 예상되나,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됨.	◦생태계 변화 없음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에 따라 계획된 입지에 대한 지형변화 발생, 현지형에 순응하는 토공계획수립에 따른 영향 최소화 및 저감대책 수립	◦추가적인 지형변화가 없으므로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 없음
	환경기준의 유지 및 달성에 미치는 영향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에 따라 계획된 입지에 대한 공사로 부유토사, 비산먼지, 소음·진동 등의 발생으로 일시적인 환경영향이 예상되나, 적절한 저감대책수립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환경영향 없음.
선정안		○	
선정사유		◦NO Action시 자연환경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해남군의 효율적인 농어촌도로 운영·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며, 주변 자연환경과 순응하는 계획수립 및 환경저감대책을 통해 계획수립으로 인한 영향 최소화 및 환경기준 유지 가능함. ◦따라서, 해남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을 시행(Action)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나. 시기·순서

- 군도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 후 단위구간별·단계별 시행(1)안과 일괄 시행(2)안을 대안으로 비교 검토하였음.

<표 3-3> 시기·순서에 대한 비교·검토

구 분	대안 1 (단계별 시행)	대안 2 (일괄 시행)
기본방향	◦도로별·단계별로 시행	◦일괄적으로 시행
개 요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에 따른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도로별·단계별로 공사계획 및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행	◦기본계획 수립후 실시설계에 따른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도로별·단계별 구분 없이 전체 도로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공사를 시행
장 점	◦주변 개발계획 및 주민 민원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시행 가능 ◦무분별한 자연환경 훼손을 줄일 수 있음.	◦공사기간 단축으로 효율적인 도로 운영·관리 가능
단 점	◦각 노선별 개발계획 수립으로 공사시기가 서로 상이하고, 공사기간이 다소 소요	◦동시다발적인 공사로 인한 무분별한 자연훼손 및 야생생물의 서식·휴식처에 대한 간섭·교란의 발생과 회피이동의 어려움 발생 ◦공사기간 내 도로차단 등으로 인한 교통 흐름 불편
선정안	○	
선정사유	◦공사기간이 다소 소요되나, 도로별·단계별 공사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분별한 자연훼손을 줄이고, 공사구간내 야생생물의 교란발생에 유기적으로 대처가 가능하고, 주변 개발계획 및 주민민원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대안1(단계별 시행) 안을 선정함	

제 4 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4.1 환경영향요소 추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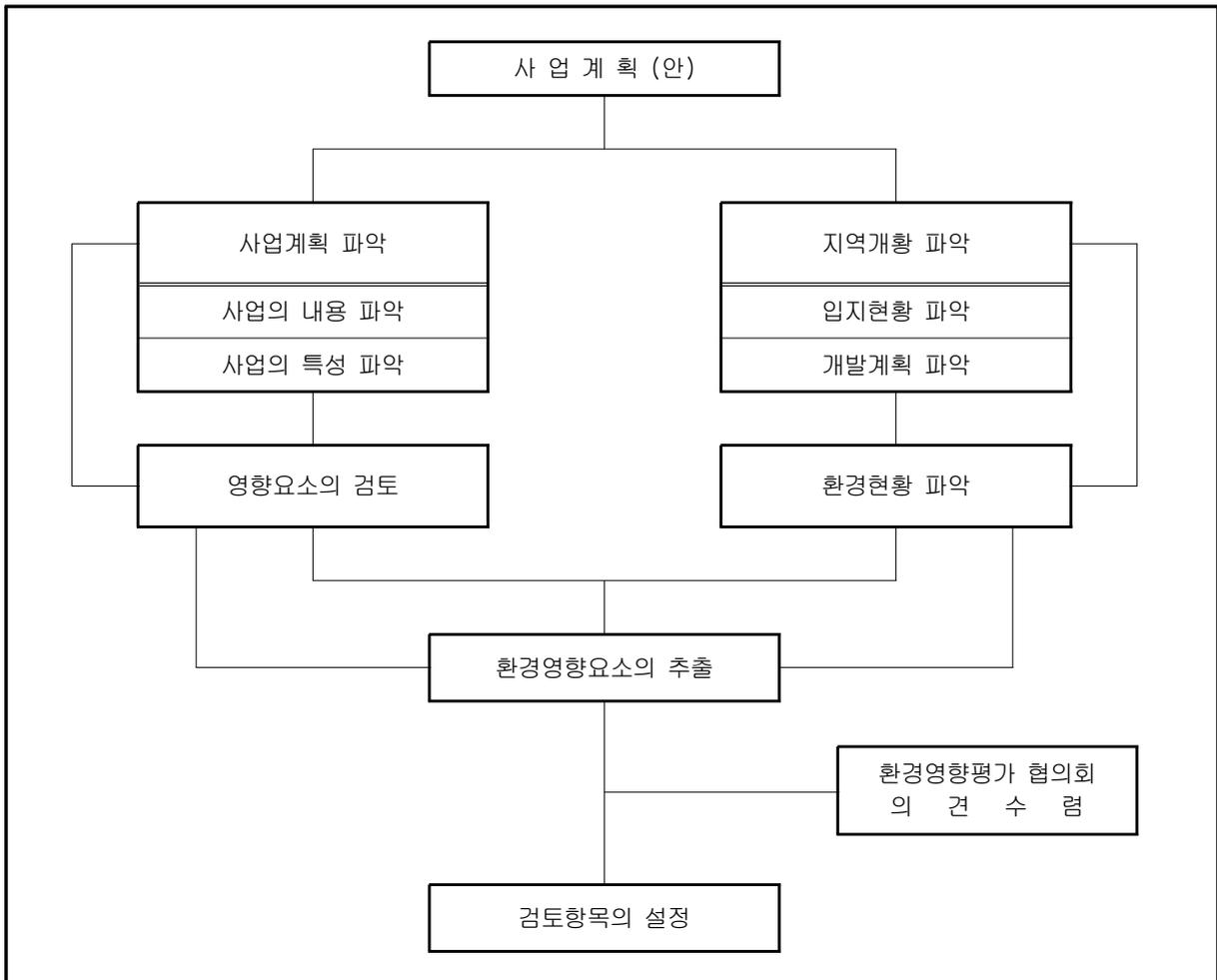
4.2 평가항목의 설정

제 4 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4.1 환경영향요소 추출

- 환경영향요소란 개발계획의 시행시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에 인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사회·경제적인 환경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원인요소로, 환경영향요소 추출시에는 개발사업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본 계획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요인(주변환경에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사업의 특성 및 주변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사시와 운영시로 구분하고 다음 그림과 같이 구분, 추출하였음.

<그림 4.1-1> 환경영향요소 및 검토항목의 설정 흐름도



4.2 평가항목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을 위한 검토항목은 사업의 유형별·단계별 환경영향인자를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 2022-240호」 등을 참고하여 설정함.
- 본 계획 시행에 따른 중점검토항목의 설정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2-240호, 2022.12.12)」을 참고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동·식물상, 지형·지질, 경관, 수질, 해양환경, 대기질, 온실가스, 소음·진동, 토지이용 등의 9개 항목을 중점검토항목으로 설정하였음.
- 한편, 중점검토항목 이외에도 사업의 특성상 중점검토항목의 예측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연환경자산, 기상, 토양,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친환경적자원순환, 인구 등 6개 항목을 일반검토 항목으로 설정하였음.
- 계획내용 및 계획구간과 무관한 수리·수문, 악취,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주거, 산업 등 7개 항목은 제외 항목으로 설정하였음.

<표 4.2-1> 평가항목의 선정

평가항목	항목		선정(중점, 일반)/제외	선정(제외) 사유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 및 분석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 계획비교, 수단방법, 수요공급, 입지 및 기타 등의 대안 분석 실시
입지의 타당성	생물다양성·서식지보전	동·식물상	중점	· 계획시행으로 인한 동·식물의 영향 및 변화
		자연환경자산	일반	· 계획시행으로 인한 자연환경자산의 영향 및 변화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중점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지형·지질 특성 파악 및 절·성토로 인한 지형변화 ·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에 미치는 영향
		주변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위락	제외
	경관		중점	·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의 경관요소 파악 ·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경관변화
	수환경의 보전	수질	중점	· 수질보전 관련 구역지정 현황 파악
		수리·수문	제외	· 계획특성상 수리·수문 요인 없음
		해양환경	중점	· 계획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표 4.2-1> 평가항목의 선정(계속)

평가항목	항목		선정(중점, 일반)/제외	선정(제외) 사유
입 지 의 타 당 성	생활 환경의 안정성	기상	일반	·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대 기 질	중점	· 대기오염도 현황 · 장래 개별 개발사업시 대기질에 영향 발생 여부
		악취	제외	·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온실가스	중점	· 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발생
		토양	일반	· 장래 개별 개발사업시 토양에 영향 발생 여부
		소음·진동	중점	· 장래 개별 개발사업시 소음·진동에 영향 발생 여부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일반	· 계획 시행 전·후 주변 환경기초시설 적정 검토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 원순환	일반	· 장래 개별 개발사업시 폐기물의 영향 발생 여부
	사회 경제 환경 과의 조화성	토지이용	중점	·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 검토
		위생공중보건	제외	·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전파장해	제외	·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일조장해	제외	·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인구	일반	· 계획시행으로 인한 인구 변화 검토
		주거	제외	·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산업	제외	·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제 5 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5.1 의견수렴 계획

제 5 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5.1 의견수렴 계획

가. 관련근거

-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에 대한 절차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나. 주민 등의 의견수렴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

-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마다 1개소 이상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비치하고,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주민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에 대하여 미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토록 할 것임.

□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 「환경영향평가법」 제 13조 따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임.
- 공청회는 주민들로부터 별도로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하기로 할 것임.

다. 참고사항

-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6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6.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6.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제 6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6.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가. 시행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실시함.

나. 심의기간

- 2023년 2월 15일 ~ 3월 3일

다. 심의방법

- 서면심의

다. 심의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결정, 토지이용구상안 및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평가 항목·범위 등의 설정
- 위원 구성 : 9명

연번	직 위	소 속 (직 위)	성 명	연 락 처	비 고
1	위원장	해남군 건설도시과장	박석희		
2	위 원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조연지		
3	”	해남군 건설도시과 도로관리 팀장	윤산호		
4	”	㈜정원평가기술단 대표 (환경영향평가사)	양인숙		
5	”	한국환경연구원 환경평가본부 공공인프라평가실	박태호		영산강유역 환경청 추천
6	”	해남군 환경과 기후환경정책 팀장	이상복		
7	”	해남군 주민대표	김영선		야생 동물협회
8	”	자연사랑메아리 대표	박종삼		
9	”	광주전남연구원	김동주		목포지방 해양수산청 추천

6.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신 해남군수(건설도시과장)
(경유)

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보냄[해남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정비)]

1. 해남군 건설도시과-5888(2023.2.1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군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 협의회) 및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제1항에 따라 심의 요청한 '해남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정비)'에 대한 심의 의견을 불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심의의견 1부. 끝.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주무관	조연지	주무관	김유미	과장	류은선
협조자					전결 2023. 3. 6.
시행	환경평가과-1382	(2023. 3. 6.)	접수	건설도시과-8422	(2023. 3. 6.)
우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 http://yeongsan.me.go.kr				
전화번호	062-410-5244	팩스번호	062-410-5249	/ cyj112@me.go.kr	/ 비공개(5)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해남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정비)】

□ 총괄 의견

- 동 계획은 해남군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총 209개 노선(총 연장 923.3km)에 대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개발기본계획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본안) 작성 시 아래의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 환경친화적인 농어촌 도로망 정비를 위해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향후 농어촌도로 사업추진을 위한 환경보전방안 및 목표를 제시하여야 함
- 평가서상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어야 하며, 조사방법(지점 선정, 예측 조건, 예측 사용된 수치 등)에 대한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 2021-300호, '21.12.30.)」 및 「환경영향평가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환경부, 2023.1.)」 등에 따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함
 - 문헌자료 및 기초자료는 최신자료를 사용하고, 평가서상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을 제시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의 범위(영향권역 포함)는 계획노선 지역 및 주변지역의 현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포함하고, 평가항목별 범위 설정 근거 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인구, 교통량, 주변 개발계획 등 수요 예측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제시
 - ※ 영향권 내 다른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환경 누적평가 실시

2. 토지이용구상안 및 대안

- 계획의 목적, 주변 토지이용상황, 입지여건 및 환경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비교 대안(Action/No Action)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여 제시하고 구체적인 대안 선정사유와 최종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신설 또는 확장이 이루어지는 노선에 대해서는 주변의 개발현황 및 계획 등을 반영하여 현재·장래의 인구·교통량 증가 등의 수요를 예측함으로써, 금회 노선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검토·제시하여야 함
 - 계획노선에 대한 신설, 확장, 개설, 미개설 여부 등을 구분·제시(도면 등)
- 계획노선 및 주변 지역의 지형 및 자연 생태계 현황 등을 고려,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지형 훼손·생태계 단절 등을 최소화하는 노선을 적극 모색하는 등 친환경적인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대안의 선정과 연계
- 계획노선 주변의 정온시설 현황(주거 밀집지역, 학교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도로개설로 인한 영향 예측 및 걱정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도로 개설 이후 충분한 저감대책 수립 이후에도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선형을 우회하는 방안 등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칠 중요도가 큰 중점 평가 항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상세히 조사하여 평가서에 기술하되, 각 항목별로 현황, 예측 및 저감방안이 상호 긴밀한 연관성을 갖도록 검토·작성하여야 함
- 평가 범위는 계획 수립·시행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포함하여 설정하고, 평가항목별 영향권범위 설정 근거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생태·자연도 1등급, 습지보호지역, 범정보호종 서식지,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 보전이 요구되는 지역과 계획노선과의 이격거리를 제시하고 사업에 따른 영향 여부 등 검토·제시하여야 함
 - ※ 계획노선에 보호지역이 포함되거나 인접한 경우, 해당 지역을 확대한 도면 등을 제시

- 동·식물상, 대기질 및 소음·진동 등 각 항목별 평가범위 설정 시 사업의 특성, 입지여건, 지역 특성 및 환경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대기질 분야에 온실가스 항목을 포함하여 예측(운영시 포함)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적정 저감방안(친환경 공법·장비 사용 등)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각 계획노선에 대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여부를 검토·제시하여야 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주민 등 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3조~제19조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다양한 매체·경로를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지역주민·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을 충실히 반영

5. 기타

- 동 계획을 추진하는 기관에서는 상기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고, 반영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동 사업시행에 따른 타법 등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대상 여부 및 이행 여부(계획 포함)를 제시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의 공정한 거래정착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원도급 및 하도급률 검토서”를 작성·제시하여야 함

2023. 3. .

심의위원 조연지 (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해남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 총괄 의견

- 동 사업은 해남군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아래의 심의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은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함.
- 대상지역 설정 시 설정사유를 명기하고,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등 관련자료 명시 및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계획노선 및 주변의 지형, 정온시설, 유입 수계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범위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설정하여야 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3. 대안

- “계획비교”, “시기·순서”가 적정하고 판단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 사유에 대한 의견 : 적정
-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에 대한 의견 : 적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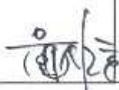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실시해야함.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없음

2023. 2. .

심의위원 윤 산 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해남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계획 수립 시 환경 관련 주요 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자연공원 등), 생태자연도 1등급지, 주요 생태축(호남정맥, 기맥, 지맥)과의 연관성을 검토하여 환경친화적인 도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및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평가대상지역은 도면으로 표시하여 제시하여야 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상위 계획 및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본 도로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및 적합성을 고려하여야 함.

3. 대안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 방법(대안은 계획비교와 입지 대안을 포함한 3개 이상을 설정)을 검토하여 필요시 추가 대안을 설정하여야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계획구간 중 향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구간은 현 토지이용 현황 및 환경 현황을 제시하고 이로 인한 환경평가 및 환경보전대책에 대한 기본 방향을 수립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및 관련 규정에 준하여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람.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 없음

2023. 2. 20.

심의위원 양인숙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해남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본 건은 전라남도 해남군 전역을 대상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209개소, 923.3km)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의견임
- 계획노선 중 생태계 민감지역을 통과하는 신설노선이 있으므로 주변 현황조사를 면밀하게 실시하고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 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 없음
3. 대안
 - 의견 없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생태계 민감지역 등을 통과하거나 연접하는 도로의 경우 현황 조사를 면밀하게 진행하여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특히 겨울철새도래지(고천암호 금호호), 수산자원보호구역, 완도 도암만 환경보전 해역 등을 통과하여 신설되는 노선의 경우 노선 신설로 인해 주변 생태계에 과도한 영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 없음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 없음

2023. 02 . 27 .

심의위원 박 태 호



망끝해남, 한반도의 시작



해 남 군



수신 건설도시과장

(경유)

제목 해남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준비서 심의 결과 제출

1. 건설도시과-5888(2023.2.15.)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해남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준비서에 대한 심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심의 결과 1부. 끝.

환 경 과 장

서명생략

기후환경정책
팀장 **이상복** 환경과장 전결 2023. 3. 15.
김은주

협조자

시행 환경과-12096 (2023. 3. 15.) 접수 건설도시과-9901 (2023. 3. 16.)

우 59028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 <http://portal.haenam.go.kr/>

전화번호 061-530-5331 팩스번호 061-530-5585 / lsb7804@korea.kr / 대한민국 공개

다시 한 번 확인, 개인정보 보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해남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 총괄 의견

- 계획적인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계획수립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며, 환경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평가준비서에 제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신설되는 노선에 대한 환경영향에 대해 중점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 토지이용 구상안

- 금회 계획노선 중 생태, 환경적 가치가 높은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발을 지양하고, 불가피한 경우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함

3. 대안

- 사업 추진시 필요불가결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평가 항목 · 범위 · 방법 등

- 평가항목 선정 및 제외 사유에 대한 의견 : 적정
-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에 대한 의견 : 적정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사업대상지와 관련된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함.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없음

2023. . .

심의위원 이 상 복 (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해남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 총괄 의견

-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기능을 만족하면서 해남군의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아래사항을 반영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임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노선계획을 중심으로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지형·지질, 생태계 등)을 관통하거나 인접하여 통과하는 노선 주변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비교 평가

2. 토지이용 구상안

- 자연환경의 보전과 주민편의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계획(안) 수립
- 결정된 계획의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논거 명기

3. 대안

- 대안1안의 선정이 타당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불가피한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대책 수립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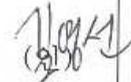
- 적정함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없음

2023. 02. 16.

심의위원 김 영 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해남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 총괄 의견

- 해남군민의 안전과 마을과 마을 또는 마을과 농경지를 연결하는 도로가 정비되고 필요한 경우 확포장 되어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시공 시 분진 및 소음 등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 필요.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 설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2. 토지이용 구상안
 - 가능한 농경지를 침범 또는 훼손하지 않도록 고려.
3. 대안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공청회 및 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설정이 전반적으로 타당함

2023. 3. 13.

심의위원 박종삼(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해남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 총괄 의견

- 대상지역은 농어촌도로의 추가(변경)을 통해 농어촌지역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 것으로 지역차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됨.
- 다만, 바다와 인접한 수계근처에서 사업이 시행될 경우에 집중강우 등에 의한 부유물질이나 토사의 유입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적절하다고 사료됨
2. 토지이용 구상안
 - 적절하다고 사료됨.
3. 대안
 - 적절하다고 사료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 환경관리해역, 영암호, 금호호, 고천암호 등 겨울철새도래지 등 주요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어 이들 인접지역의 효율적 사업추진 필요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철새 등에 대한 전문가 및 환경단체 의견수렴도 검토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공간적·시간적 사업추진계획의 수립을 통한 체계적 추진 검토

2023. 2. 21.

심의위원 김 동 주 